

제 호

(부 대 /기 관 명)

징 계 부 가 금 부 과 처 분 서

소 속 :

계 급 (직 급) : 군 번 (순 번) :

성 명 :

위 사람을 에 처함.

1. 비행건명 :
2. 징계부가금 대상금액 :
3. 징계부가금 부과배수 :
4. 징계부가금 납부 의무 금액 :

직 위 계 급 성 명 직인

※ 「군무원인사법」 제37조의2제3항 및 「군무원인사법 시행령」 제116조의2제2항에 따라 이 처분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 배수에 따른 금액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하며, 그렇지 아니할 경우 급여채권, 예금채권 또는 부동산 등에 대하여 국세채납 처분에 따른 압류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. 끝.

이 처분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「군무원인사법」 제42조에 따라 항고심사권자에게 항고할 수 있고, 관련된 법원의 판결(몰수·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)이 확정되거나 번상책임 등이 이행된 경우 「군무원인사법 시행령」 제112조제3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